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5일

⌘ 제안 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기업지원과】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

## 【환경과】

- 「악취방지법」 제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악취의 규제” 조항 삭제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지성이 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를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 【교통과】

- 「삭도·궤도법」 개정에 따라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

## □ 검토 의견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써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를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2005.5.26)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임.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란 ?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섬유, 화학, 금속, 생활용품 분야의 39품목)

○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서 규정하던 '생활악취의 규제' 조항이 「악취방지법」의 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인 '생활악취의 규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 처리하던 '폐기물과 관련한 사무'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2004.11.13)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3. 12. 31일 부칙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게 사무를 분리하는 것임.
-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관련 사무'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위임하는 것이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임.

○ 끝으로 교통과 소관으로는

- 도지사의 권한사무 중 위임에 의해 시장·군수가 처리하던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상위법령인 「삭도·궤도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삭도·궤도의 정의

- 삭도 :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예/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 궤도 :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예/ 철도, 지하철, 관광열차)

○상기와 같이 소관분야별 관련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사무처리에 대한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기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폐기물관련 사무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는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바 시군별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절한 인력과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